

서울特別市永登浦區行政法規相談室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110
----------	-----

제출년월일 : 1992년 9월 17일

제출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1. 提案經緯

가. 19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사회) 폐회중 개최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김형수위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상당실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

2. 提案理由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구가 자치구가 됨에 따라 시민을 구민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법령용어 약속상 날로부터는 날부터 사용하기 위함.

3. 主要骨子

가. 제3조 제2호중 “시민”을 “구민”으로 하고 부칙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行政法規相談室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중 “시민”을 “주민”으로 한다.

부칙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